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3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이준석 · 이주영 · 천하람
김상훈 · 안철수 · 유의동
최은석 · 최수진 · 박성민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채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생략) 1. (생략) <u><신설></u> 2. ~ 6. (생략) <u><신설></u>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1의2.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u> 2. ~ 6. (현행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 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u>